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23 선고 2022가단505542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하

피 고 1. A

2. B

변 론 종 결 2022. 10. 26.

판 결 선 고 2022. 11. 23.

주 문

1. 가. C과 피고 A 사이에 2021. 7. 7.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A는 C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10. 21.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42810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가. C과 피고 B 사이에 2021. 6. 2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는 C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6. 21.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26239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준비서면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판사 김재은

별지